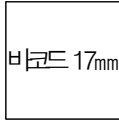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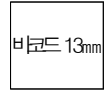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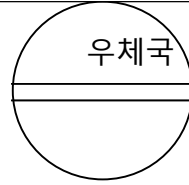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

음성반환용(외부)

받는 사람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



음성반환용(내부)

세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관련법령
① 합 계				
② 가산된 세액				
③ 차감(공제·감면 등)된 세액				
납기 내 세액(① + ② - ③)				

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(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).

세목	구분	대상금액	세율	감면액	가산된 세액	관련법령
합 계						

시·군·구	(수납은행 확인용)
-------	------------
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-------	------

전자납부번호	
--------	--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부할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	수납용
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

시·군·구	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음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
납부할 금액		

수납용
납기 내
까지
납기 후
까지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 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전자납부번호

안 내 말 씀

-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-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제출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) 또는 심판청구(제출기관: 조세심판원장)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
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

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

- ◎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-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-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,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위택스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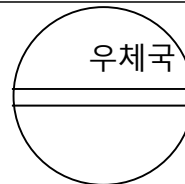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- 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- 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자동납부에 대한 안내

1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,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(자동납부는 불가합니다)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2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제출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) 또는 심판청구(제출기관: 조세심판원장)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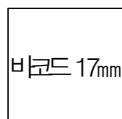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 13mm
음성 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

우편배송용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※ 계산식

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∞ 시·군·구 납세자:	(수납행) 확인용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전자납부 번호	
납기 내:	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납기 후:	
납부할 금액	까지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 단체의 장
수납용	직인

바드 13mm
 음향변환용내부

세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관련법령
① 합 계				
② 가산된 세액				
③ 차감(공제·감면 등)된 세액				
납기 내 세액(① + ② - ③)				

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(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합니다).

세목	구분	대상금액	세율	감면액	가산된 세액	관련법령
합 계						

차감된 지방세환급금 총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세목	환급금 총당액	세목	환급금 총당액

시·군·구 _____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

납세자: 주 소

납세지번호:

지 방 세

과제대상: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납기 내
			까지
			납기 후
			까지
납부할 금액			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
하십시오.

[illegible]

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직인 수납인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 번호	
------------	--

안 내 말 씀

-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-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제출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) 또는 심판청구(제출기관: 조세심판원장)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

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	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

-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6.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
7.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,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-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위택스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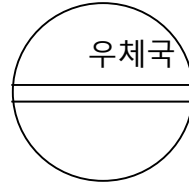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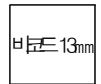
받는 사람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 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 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 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 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 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 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 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 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 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 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

음상변환용(내부)

시·군·구	(수납은행 확인용)
-------	---------------
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호

납기 내:	까지
-------	----
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부할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 단체의 장	직인
수납용		

시·군·구	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주 소	납세지번호:
--------------	--------

과세대상:	수납용 바코드
-------	---------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	수납용 납기 내 까지
납부할 금액					납기 후 까지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 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	담당자: 문의처:
--	-----------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장	직인	수납인	전자납부 번호
-----------	----	-----	------------

안 내 말 씀

1.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
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제출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) 또는 심판청구(제출기관: 조세심판원장)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3.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
4.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
5.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(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◎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

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

일자	농어촌특별세	납부할 금액

◎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6.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
7.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,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
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
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
◎ 위택스(www.wetax.go.kr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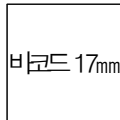
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텍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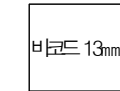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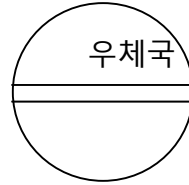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

음성변환용(외부)

받는 사람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 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 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 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 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 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 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 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 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 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				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				
세목별 부과내역 및 지방세환급금 총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				
부과세목	부과세액	환급금공제액	총당세목	환급금 총당액

시·군·구	(수납은행 확인용)
-------	---------------
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호

납기 내:	까지
-------	----
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부할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	지방자치 단체의 장	직인
수납용		

시·군·구	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입면동	과세번호	검
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--	------	---

납 세 자 주 소	납세자번호:
--------------	--------

과세대상:	수납용 바코드
-------	---------

세 목	납기 내 세액	납기 후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	납기 내 까지	납기 후 까지
납부할 금액						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: 문의처:
발행일 년 월 일 수납일 년 월 일	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	직인	수납인	전자납부 번호
-----------	----	-----	------------

- [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]

[illegible]

- 210mm×297mm(CP지 90g/㎡)